|  |
| --- |
|  |
| 춘천문화원 사업집행을 위한 단가 지침 |
|  |

제정 2020. 5. 18. (지침 제1호)

일부개정 2021. 6. 21. (지침 제3호)

|  |
| --- |
| (1) 추진 배경 |
|  |
|  **｢춘천문화원 사업집행을 위한 단가 지침｣**(2020. 5. 18.)을 개정된 2021년도 각 기준에 맞춰 새로이 수립하여,   사업집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동과 임의성을 차단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투명한 사업집행을 하고자 함 |

|  |  |  |
| --- | --- | --- |
| (2) 기준 근거 (춘천문화원 콘텐츠 대가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 | |
|  | | |
| 번호 | 비목 | 근거 |
| 1 | 원고료 | - 춘천문화원 󰡔콘텐츠 대가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2021󰡕 |
| 2 | 번역료 | - 춘천문화원 󰡔콘텐츠 대가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2021)󰡕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료 지급기준󰡕  -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료 지급기준󰡕 |
| 3 | 사진료  일러스트료 | - 춘천문화원 󰡔콘텐츠 대가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2016)󰡕 |
| 4 | 강사수당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2021)󰡕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 (2018) |

|  |  |  |
| --- | --- | --- |
| 번호 | 비목 | 근거 |
| 5 | 자문 및  심사수당 | - 춘천문화원 󰡔콘텐츠 대가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2021󰡕 |
| 6 | 학술회의 수당 | - 춘천문화원 󰡔콘텐츠 대가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
| 7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2021)󰡕 |
| 8 |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자  인건비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 |
| 9 | 자료입력비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 |
| 10 | 연구지원비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2021)󰡕  - 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2015)󰡕 |
| 11 | 아르바이트 | - 고용노동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 12 | 인쇄비 |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인쇄표준원가관리 사용자지침서 (2016)』  - 녹색기술센터『인쇄 복사물 등의 기준요금 (2018)』 |
| 13 | 식·간식비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1)』 |
| 14 | 시중노임단가 | - 대한건설협회『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2021)』 |

※ 인쇄비의 경우,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이 2011. 5. 3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시중거래가격과 타공공기관의 기준요금을 참조하여 기준요금을 정함.

|  |
| --- |
| 1. 원고료 |

1. 지급한도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지급액** |
| ㆍ논문 | 200자 원고지 1매 | 10,000원 ~ 15,000원 |
| ㆍ평론, 수필, 제언, 꽁트 | 10,000원 ~ 13,000원 |
| ㆍ부록 및 자료 | A4용지 1매 | 5,000원 ~ 6,000원 |
| ㆍ권두언 | 200자 원고지 1매 | 10,000원 ~ 15,000원 |
| ㆍ강의 원고 | A4용지 1매 | 10,000원 ~ 13,000원 |
| ㆍ춘천학연구 논문 원고 | 편당 | 500,000원 |
| ㆍ시(詩) | 60,000원 |
| ㆍ윤문료 | 200자 원고지 1매 | 3,000원 이하 |
| ㆍ교정료 | 1,000원 이하 |

※ 조사를 겸한 원고 작성의 경우, A용지 1매당 12,000 ~ 15,000원 지급

※ 외국어 원고의 경우 10% 가산 지급

2. 원고규격

|  |  |
| --- | --- |
|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 A4 용지 | ㆍ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ㆍ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 ㆍ1면 기준 300단어 |
| 파워포인트 | ㆍ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 원고지 | ㆍ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 기타 원고 지급비율

|  |  |  |
| --- | --- | --- |
| **구 분** | **기 준** | **지급 비율** |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 미지급 |
| 강의 원고 | | 강의 시간당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5일간 최고 40매로 제한) |

|  |
| --- |
| 2. 번역료 |

1. 외국어 번역료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단가** | **기준** | | | | |
| **학위** | **어학** | | | |
| **영어** | | **일어** | **중국어** |
| ‘가’급 | 20,000원 내 | 관련분야 박사과정  이상 | ㆍTOEIC | 900 | ㆍJPT 900  ㆍJLPT 1급 | ㆍHSK 6급 |
| ㆍTOEFL | 105 |
| ㆍTEPS | 766 |
| ㆍ현지 고등교육기관 졸업 | | | |
| ‘나’급 | 15,000원 내 | 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 | ㆍTOEIC | 800 | ㆍJPT 800  ㆍJLPT 2급 | ㆍHSK 5급 |
| ㆍTOEFL | 90 |
| ㆍTEPS | 637 |

※ 학위와 어학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어학기준은 복수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됨

※ 고등교육기관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름

※ 일어의 경우, 일제강점기 중등학교 이상의 졸업한 자도 허용

2. 고전문헌 번역료

|  |  |  |  |
| --- | --- | --- | --- |
| **등급** | **역사문헌** | **한국문집** | **특수고전** |
| S | 19,500원 | 24,000원 | 25,500원 |
| A | 17,500원 | 21,500원 | 20,500원 |
| B | 15,500원 | 19,000원 | 18,500원 |
| C | - | - | 16,500원 |

※ 등급은 譯者의 번역 능력에 따른 구분

※ 단가는 원고지 200매 기준

※ 역사문헌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역사적 문헌 자료

※ 한국문집 : 개인 문집, 서찰 등의 자료

※ 특수고전 : 역사문헌자료를 제외한 지리지 등의 고전 자료

|  |
| --- |
| 3. 사진료 및 일러스트(삽화)료 |

1. 사진료 지급한도

|  |  |  |  |  |
| --- | --- | --- | --- | --- |
| **등 급** | **단가(1컷)** | | **경 력 기 준** | |
| **디지털** | **아날로그**  **(원판)** |
| S등급 | 50,000원 이하 | 55,000원  이하 |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 10년 이상(연간 1회 이상) |
|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
| A등급 | 40,000원 이하 | 45,000원  이하 |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 5년 이상 ~ 10년 미만 |
|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5회 이상 ~ 30회 미만 |
| B등급 | 30,000원 이하 | 35,000원  이하 |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 5년 이하 |
|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 5년 미만 또는 15회 미만 |
| C등급 | 20,000원 이하 | | 독자 투고 사진, 청탁원고에 부가되는 사진 | |
| D등급 | 3,000원 이하 | | 현장조사 | |

※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 C등급 이상 단가는 2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 후보정작업을 포함함

※ D등급 단가는 현장조사시,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의 경우 적용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 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단가를 산정 및 조정할 수 있음

2. 일러스트(삽화)료 지급한도

|  |  |  |
| --- | --- | --- |
| **구 분** | **지급액** | **비 고** |
| 표지용 | 500,000원 이하 | 규정을 초과하는 유명작가 등의 경유는 별도 결재 |
| 스토리형 | 200,000원 이하 |
| 단순형 | 100,000원 이하 |
| 표제컷 | 50,000원 이하 |

|  |
| --- |
| 4. 강사수당 |

1. 일반강의 강사수당

| **등급** | **지급기준(만원)** | |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
| --- | --- | --- | --- | --- |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 **(이동시간보상 30)** | |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 **(이동시간보상 20)** | |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 **(이동시간보상 12)** | |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 **(이동시간보상 8)** | |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문화원 5년 이상 강의 경력자 |  |
| **(이동시간보상 5)** | |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 **(이동시간보상 4)** | |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
| **(이동시간보상 3)** | |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2.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3.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4.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5.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2. 초청강연회 및 강의 수당

|  |  |  |
| --- | --- | --- |
| **구분** | **적용대상** | **지급액** |
| 초청강연회 수당 | 국내인사 | 300,000원 ~ 1,000,000원 |
| 해외인사 | 300,000원 ~ 1,500,000원 |
| 강의 수당 | 문화원 직원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최초 1시간 60,000원  1시간 초과시 마다 30,000원 |

주) 1. 저명도, 연구경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3. 오프라인 강의시간 산출기준

|  |  |  |  |  |
| --- | --- | --- | --- | --- |
| **강의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4. 온라인 강의시간 (원격수업) 산출기준

|  |  |
| --- | --- |
| **개 념** | ㆍ강사와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  ㆍ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 |
| **강의시간**  **산출기준** | ㆍ비동시적 원격수업의 강의 콘텐츠는 1차시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이 2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  ㆍ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주) 1. 토론,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 등은 강의 콘텐츠의 순수 재생시간이 25분 이하로 제작 가능

2. 원격수업의 학습 시간 및 이수 시간은 콘텐츠 재생 시간,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 종합한 개념임

|  |
| --- |
| 5. 자문 및 심사수당 |

|  |  |  |
| --- | --- | --- |
| **구분** | **실적 기준** | **지급액** |
| 회의수당 | 이사회, 자문위원회, 문화학교 운영위원회,  기타위원회 | 100,000원 |
| 자문수당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 1시간당 100,000원 |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0,000원 이하 |
|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0,000원 |
|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0,000원 |
| 공모전 심사수당 | 200,000원 이하 |
| 직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심사수당 | 100,000원 |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
| --- |
| 6. 학술회의수당 |

|  |  |  |
| --- | --- | --- |
| **구 분** | **대상자** | **지급액** |
| 발표수당 | 발표자 | 300,000원 ~ 600,000원 |
| 토론수당 | 토론자 | 150,000원 ~ 400,000원 |
| 사회자수당 | 사회자 | 150,000원 ~ 400,000원 |
| 좌장수당 | 좌 장 | 300,000원 ~ 500,000원 |

주) 1. 저명도, 연구경력, 연구실적, 회의시간, 회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  |
| --- |
| 7.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등 급** | **기준단가** | **상여금** | **퇴직충당금** | **월인건비** | **일임금(원/일)** |
| 책임연구원 | 3,245,879원 | 1,081,959원 | 360,653원 | 4,688,491원 | 213,113원 |
| 연구원 | 2,488,897원 | 829,632원 | 276,544원 | 3,595,073원 | 163,412원 |
| 연구보조원 | 1,663,743원 | 554,581원 | 184,860원 | 2,403,184원 | 109,236원 |
| 보조원 | 1,247,850원 | 415,950원 | 138,650원 | 1,802,450원 | 81,930원 |

주) 1.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

2.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3. 상여금은 기준단가에 대하여 연 400% 계상  
4. 퇴직충당금은 (기준단가+상여금)에 대하여 연 1/12 계상  
5. 월인건비 = 기준단가 + 상여금 + 퇴직충당금  
6. 일임금은 참여율 50%을 기준으로 한 월인건비를 일급으로 변환하여 적용 (1일 4시간)  
7. 학술연구용역 등급 기준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대학전임교원 이상

②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유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해당연구분야에 5회 이상 연구실적이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유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해당연구분야에 3회 이상 연구실적이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당해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며, 대학원생 이상으로 해당연구분야에 1회 이상 연구실적이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8.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자 인건비 |

|  |  |  |
| --- | --- | --- |
| **등 급**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1)** | **일임금(원/일)** |
| 전문작업자 (‘가’급) | 월 4,977,794원 | 226,263원 |
| 전문작업자 (‘나’급) | 월 3,327,486원 | 151,249원 |
| 전문작업자 (‘다’급)  <자료입력원> | 월 2,495,700원 | 113,440원 |

주) 1.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100%로 산정한 것  
2. 작업자 등급별 인금 기준  
 1) 전문작업자 (‘가’급)  
 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의 연구원 임금 단가  
 ② 공정전문가 경력이 6년 이상인 작업자  
 2) 전문작업자 (‘나’급)  
 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의 연구보조원 임금 단가  
 ② 공정전문가 경력이 3년 이상 6년 미만인 작업자  
 3) 전문작업자 (‘다’급)  
 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의 보조원 임금 단가  
 ② 공정전문가 경력이 3년 미만인 작업자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자 인건비 산출근거  
 ㆍ등급별 일임금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 22일

|  |
| --- |
| 9. 자료입력비 |

|  |  |  |
| --- | --- | --- |
| **한글** | **국한문 병기** | **국한문 병용** |
| 4,000원 | 5,000원 | 6,000원 |

주) 1. 현대간행물 1일 작업량 : 43,216자  
2. 고전적 자료 1일 작업량 : 7,353자  
3. A4 1매당 글자수 1,800자, 기본여백, 글씨크기 10pt, 행간 띄어쓰기 금지(단락 구분만 허용)  
4. 자료입력원(학술연구용역 인건비의 보조원에 해당) 기준 단가 113,440원  
5. 자료입력비 산출근거  
 ㆍ전문작업자 ‘다’급(자료입력원) 기준 단가 ÷ (1일 작업량 ÷ A4 1매당 글자수)

|  |
| --- |
| 10. 연구지원비 |

|  |  |  |
| --- | --- | --- |
| **구 분** | **기준** | **지급액** |
| 연구지원비 | 1편당 | 5,000,000원 |

주) 1. 연구지원비 산출근거  
 ㆍ5,000,000원 = 2,500,000원(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등급의 월 기준단가) x 2개월분

※ 상여금, 퇴직충당금은 제외한 기준단가 금액  
2. 연구지원비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  |
| --- |
| 11. 아르바이트 |

|  |  |
| --- | --- |
| **구 분** | **지급액** |
| 아르바이트 일급 | 80,000원 |

주) 1. 시급 9,000원 기준 (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  
2. 아르바이트 일급 산출근거

ㆍ80,000원 = (시급 9,000원 x 8시간) + 식대비 8,000원

|  |
| --- |
| 12. 인쇄비 |

1. 인쇄용어의 정의 및 기준

❏ 인쇄종류

❍ 일반인쇄(옵셋인쇄) : 고급 칼라인쇄로 색상의 표현이 다양하며   
대량 인쇄시 효과적

❍ 경인쇄(마스타인쇄) : 기본 단색인쇄로 소량 인쇄시 효과적

❏ 색도

❍ 황, 적, 청, 흑 4가지 색으로 모든 색 구현, 사용되는 수량에 따라 결정

※ 검정만 사용 : 1색도, 검정+파랑 : 2색도, 칼라인쇄 : 4색도

❏ 인쇄용지규격

❍ 종류 : 4x6판 전지(788×1,091mm), 5x7판 전지(636×939mm)

❍ 절지 : 전지를 나눈 것, 전지를 16등분하면 16절지

|  |  |  |  |  |  |
| --- | --- | --- | --- | --- | --- |
| **절수** | **치수** | **크기(㎜)** | **절수** | **치수** | **크기(㎜)** |
| 전지(4×6) | 26×36 | 788×1090 | 10절(4×6)  국8절(5×7)  A4 | 7.2×13 | 218×394 |
| 2절(4×6) | 18×26 | 545×788 | 7.5×10.5 | 227×318 |
| 4절(4×6) | 13×18 | 394×545 | 8×10 | 242×303 |
| 8절(4×6)B4 | 9×13 | 273×394 | 16절(4×6)B5 | 6.5×9 | 197×273 |

❏ 일반관리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인쇄는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업체의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분석, 판매비를 제외한 실제로 발생하는 일반관리 비율을 적용

❏ 이윤

❍ 재료비(용지대 등), 외부 위탁작업비 등을 제외한 노무비 즉, 조판비, 인쇄비, 제본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2. 일반(옵셋)인쇄 기준요금 적용방법

❏ 용지대

❍ 용지의 단가는 물가정보지 등(최저가격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 후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

|  |
| --- |
| **용지대 = [부수×(페이지수÷2)÷(절수×500)] × 연당단가 × (1+손지율)** |

※ 국전지(5×7)는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기재되지 않음으로 4×6전지가격의 69.4%로 환산

❍ 옵셋(매엽기)인쇄 손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1색**  **(1도단면)** | **1/1색**  **(1도양면)** | **2색**  **(2도단면)** | **2/2색**  **(2도양면)** | **3색**  **(3도단면)** | **3/3색**  **(3도양면)** | **4색**  **(4도단면)** | **4/4색**  **(4도양면)** |
| 1,000부 까지  2,000부 까지  3,000부 까지  5,000부 까지  10,000부 까지  13,000부 까지  13,000부 초과 | 9.0%  8.2%  7.0%  5.5%  3.7%  3.4%  2.5% | 12.0%  11.1%  9.3%  7.3%  5.0%  4.6%  3.3% | 14.0%  13.0%  11.0%  8.4%  5.7%  5.2%  3.8% | 17.0%  16.0%  14.0%  10.8%  7.2%  6.6%  4.8% | 18.0%  16.5%  14.0%  11.0%  7.5%  6.9%  5.0% | 23.0%  21.5%  18.5%  14.5%  9.9%  9.0%  6.5% | 23.0%  21.0%  17.5%  13.5%  9.3%  8.6%  6.3% | 29.0%  27.0%  23.0%  18.0%  12.4%  11.3%  8.2% |

❏ 기획 및 디자인료

❍ 시중 거래가격 적용

❏ 조판료 : 원고를 타자하는 일반적인 편집비용

|  |
| --- |
| **조판료 = 면수 × (기준단가 – 조판감액)** |

❍ 기준단가

|  |  |  |
| --- | --- | --- |
| **구 분** | **판 형** | **기준단가** |
| 일반책자 | 4×6배판(16절)  4×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 10,050원  6,200원  14,630원  7,280원  8,580원 |
| 화 보  (3색이상 칼라편집 작업시) | 4×6배판(16절)  4×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 25,400원  14,390원  35,700원  20,500원  22,300원 |

주) (1) 조판완료 후 원고 변경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율에 따라 가산

(2) 슬라이드대여료, 컬러프린터 및 인쇄교정을 필요로 할 때는 시중가격을 준용

(3) 포스터, 상업인쇄물의 디자인과 컷, 삽화 등은 시중가격을 준용

(4) 2색 또는 3색 기준으로 전자조판 및 색교정할 경우에는 일반책자 기준요금의 40%, 50%를 각각 가산

(5) 조판 및 편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조판료를 감액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조판료 감액표

|  |  |  |  |
| --- | --- | --- | --- |
| **구 분** | **조판생략 감액(1)** | **조판생략 감액(2)** | **조판생략 감액(3)** |
| 8 절  10 절  16 절  25 절  32 절 | 8,560원  6,780원  4,620원  2,950원  2,390원 | 6,690원  5,150원  3,470원  2,320원  1,500원 | 4,420원  3,500원  2,380원  1,530원  1,240원 |

주) (1) 제판용 인화지 (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글자의 크기나 행간 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 인쇄판대(소부비) : 종이에 인쇄하기 위한 판

|  |
| --- |
| **인쇄판대 = 기준단가 × 색도 × (전체페이지 ÷ 판당면수)** |

※ 판당면수 : 16절지는 전지를 16등분한 것이다. 즉 전지로 인쇄하면 16절지 16장을 한 번에 인쇄하는 것. 2절의 경우 전지의 절반

|  |  |  |  |
| --- | --- | --- | --- |
| **구 분** | **2절 (4X6판)** | **전지 (4X6판)** | **국판전지** |
| P.S 판 | 12,140원 | 20,890원 | 4X6판 전지의 69.4% |

주) (1) 4절은 2절 요금의 50%를 계상하고, 4절 미만은 4절로 본다.  
(2) 70,000통 이상의 경우 100% 가산

예시) 1판의 구정 (2절의 경우)

|  |  |  |  |
| --- | --- | --- | --- |
| 1페이지 | 2페이지 | 3페이지 | 4페이지 |
| 5페이지 | 6페이지 | 7페이지 | 8페이지 |

⇒ 2절 한 장에는,

16절 8페이지가 인쇄됨

❏ 옵셋인쇄료(2절단면기준) : 종이에 직접 출력하는 비용

|  |
| --- |
| **옵셋인쇄료 = 부수 × 기준단가 × 1색도의 판수 × (1 + 가감산비율)** |

예시) 1500부, 4색도, 16절, 500p, 100g 아트지인 경우?

=> 1500부 × 39.05 × 63판 × (1 + 0.3)

주의사항 : 인쇄료 가산시 곱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산비율은 더하여야 함

=> 잘못된 계산) 가격 × 1.3 × 1.2  
올바른 계산) 가격 × (1+0.3+0.2)

|  |  |  |  |  |
| --- | --- | --- | --- | --- |
| **부 수** | **기준단가 (부당) - 2절 단면 기준, 단위(원)** | | | |
| **1색도** | **2색도** | **3색도** | **4색도** |
| 1,000부 까지  2,000부 까지  3,000부 까지  5,000부 까지  7,000부 까지  10,000부 까지  13,000부 까지  13,000부 초과 | 13.28  12.03  10.71  9.30  8.67  7.84  6.52  5.17 | 23.72  21.42  18.85  16.21  14.99  13.48  11.11  8.55 | 34.37  30.77  26.97  22.90  20.91  18.54  14.94  11.06 | 43.46  39.05  33.85  28.74  26.29  23.37  18.89  14.29 |

주) (1) 150g/m2 이상의 후지 또는 50g/m2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우에는 30%를 가산.

(2) 원색인쇄는 20%를 가산한다.

(3) 금분, 은분, 펄 (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4)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5)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감산한다.

(6)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7) 4×6전지 단일 인쇄물로 4도 인쇄시 70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인쇄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산한다.

- 70연 이상 100연 미만(3%), 100연 이상 150연 미만(5%), 150연 이상 200연 미만(6%) 200연 이상(7%)

(8) 3절인쇄는 2절인쇄의 67% 요금을 계산한다.

(9) 전지는 2절인쇄의 100% 가산, 4절은 50% 감산한다.

❏ 책자 제본료

❍ 인쇄된 종이를 책자형태로 만들어 주는 작업

|  |
| --- |
| **제본료 = 기준단가 × 페이지수 × (1+가산비율)** |

❍ 무사무선철(본드제본), 반양장(본드+실제본), 양장(실제본)

|  |  |  |  |
| --- | --- | --- | --- |
| (면당) |  |  | (단위 : 원) |
| **판 형** | **무사무선철** | **반양장** | **양 장** |
| 4×6배판 (16절)  4×6 판 (32절)  국 배 판 (10절)  국 판 (25절)  크라운판 (18절) | 0.974  0.771  1.683  0.798  0.869 | 1.134  0.915  1.980  0.968  1.049 | 1.617  1.347  2.886  1.382  1.491 |

주)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100g/m2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4)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 / 반양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 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5) 간지 (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 전체 금액의 14% 범위 내에서 지급

❏ 이윤

❍ 용지대, 외부위탁작업비 등을 제외한 전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

❏ 적용율

❍ 옵셋 인쇄의 경우 80% 범위 내에서 단가적용

※ 법령집 등의 단순, 대량인쇄의 경우 적용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음

3. (경인쇄) 기준요금 적용방법

❏ 표지요금

❍ 인쇄료

|  |
| --- |
| 경인쇄 계산식 = ((매수(크기+색상+용지+기타) X 50부까지 금액) + (10부 금액 X ((전체부수-50) ÷ 10)) |

- 크기 : 8절책자(5매), 10절책자(5매), 16절책자(3매)

- 색상 : 2색도(2.5매), 3색도(5매), 4색도(7.5매)

- 용지 : 아트지 및 레자크지(2.5매)

- 기타 : 코팅(5매)

‣ 예시) 1000부, 8절, 칼라(4색), 아트지, 코팅안된 표지의 인쇄가격은?

=> ((5매+7.5매+2.5매) × 15,370원) + (183×(1,000-50)÷10)) = 247,935원

❏ 본문

❍ 인쇄료

|  |
| --- |
| 계산식 = 면수 X [50부까지 금액 - 조판감액 + (10부금액 X (전체부수-50)÷10)] |

(인쇄면당,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수** | **지질** | **50부까지** | **10부마다** | **절수** | **지질** | **50부까지** | **10부마다** |
| 8절 |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 15,080  15,270  15,370 | 132  157  183 | 25절 |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 5,510  5,540  5,580 | 72  74  80 |
| 10절 |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 11,960  12,040  12,150 | 122  140  157 | 32절 |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 4,150  4,160  4,190 | 47  50  55 |
| 16절 |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 8,070  8,120  8,180 | 81  91  101 |  |  |  |  |

|  |  |  |
| --- | --- | --- |
| **신문용지** | **중질지** | **백상지** |
|  |  |  |

❍ 조판료 감액표

(단위 : 원)

|  |  |  |  |
| --- | --- | --- | --- |
| **구 분** | **조판생략 감액(1)** | **조판생략 감액(2)** | **조판생략 감액(3)** |
| 8절  10절  16절  25절  32절 | 8,560  6,780  4,620  2,950  2,390 | 6,690  5,150  3,470  2,320  1,500 | 4,420  3,500  2,380  1,530  1,240 |

주) (1) 제판용 인화지 (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 예시) 16절, 500p, 1000부, 백상지, 글자의 크기나 행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를 제출한 경우 본문 인쇄가격은?

=> 500p × [8,180 – 2,380) + 101 × (1000-50)/10] = 7,697,500원

❏ 적용율

❍ 경인쇄(마스터인쇄)의 경우 이윤이 기준요금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에 80% 범위 내에서 단가 적용

- 법령집 등의 단순, 대량인쇄의 경우 적용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경인쇄 기준요금은 재료비(용지 및 부재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임

4. 인쇄 방법별 산출 예시

❏ 옵셋인쇄

|  |  |  |  |  |  |
| --- | --- | --- | --- | --- | --- |
| **순 번** | **품 명** | | **산 출 내 역** | **금 액 (원)** | **비고** |
| 1 | 용지대 | 표지 | [1,500÷(6×500)]×142,849×(1+0.23) | 87,852 |  |
| 본문 | [1,500×(600÷2)÷(16×500)]×26,592×(1+0.16) | 1,735,128 |  |
| 면지 |  |  |  |
| 2 | 조판료 | 표지 |  |  |  |
| 본문 | 600×[(10,050-2,380)×1.4] | 6,442,800 |  |
| 면지 |  |  |  |
| 3 | 인쇄판대 | 표지 | 20,890×4×(1÷6) | 13,369 |  |
| 본문 | 14,498×2×(600÷16) | 1,087,350 |  |
| 면지 |  |  |  |
| 4 | 옵셋  인쇄료 | 표지 | 1,500×39.05×4×1 | 234,300 |  |
| 본문 | 1,500×14.35×62×1 | 1,334,550 |  |
| 면지 |  |  |  |
| 5 | 제본료 | | 0.974×600×1,500 | 876,600 |  |
| 6 | 기타 | |  |  |  |
| 소 계 | | |  | 11,811,949 |  |
| 7 | 일반관리비 | | (1+2+3+4+5+6=11,811,949)×**14%** | 1,653,672 |  |
| 8 | 이윤 | | (2+3+4+5+6+7=11,642,641)×**10%** | 1,164,264 |  |
| 소 계 | | | (1+2+3+4+5+6+7+8) | 14,629,885 |  |
| 적용율 | | | **80%** | 12,430,000 | 천원이하절사 |
| **공급가액** | | |  | **12,430,000** |  |
| **부가세 (공급가액\*10%)** | | |  | **1,243,000** |  |
| **총액** | | |  | **13,673,000** |  |

❏ 경인쇄

|  |  |  |  |  |
| --- | --- | --- | --- | --- |
| 인 쇄 내 역 | | | | |
| 품 명 | 연구보고서 | | | |
| 규 격 | 16절 | | | |
| 부 수 | 1,000부 | | | |
| 면 수 | 500page | | | |
| 표 지 | 색상(**칼라**, 흑백) | 지질(**아트지**, 레자크지, 백상지) | 코팅(유, **무**) | |
| 본 문 | 지질(**백상지**, 중질지, 신문용지) | | | |
| 조판생략  여 부 | **조판생략감액 3번** (글자의 크기나 행간조정) | | | |
| 산 출 내 역 | | | | |
| 구 분 | 산 식 | | | 금 액 (원) |
| 표 지 | ((5매+7.5매+2.5매) × 15,370) + (183 ×((1,000-50)÷10)) | | | 247,935 |
| 내 지 | 500p × [8,180 - 2,380 + (101 × (1,000-50)÷10)] | | | 7,697,500 |
| 소 계 |  | | | 7,945,435 |
| 적용율 | 80% (천원이하 절사) | | | 6,350,000 |
| 부 가  가치세 | 10% | | | 635,000 |
| **합 계** | **천원이하 절사** | | | **6,985,000** |

5. (복사물 등) 기준요금 적용방법

❏ 복사 및 제본물 요금표 (부가세 별도)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 | **단위** | **단가(원)** |
| 제본 | A4 | 컬러 | 아트지 200g이상 비닐코팅 | 권 | 3,000 |
| B5 | 컬러 | 아트지 200g이상 비닐코팅 | 권 | 3,000 |
| A4 | 일반 | 아트지 200g이상 비닐코팅 | 권 | 1,000 |
| B5 | 일반 | 아트지 200g이상 비닐코팅 | 권 | 1,000 |
| A4 | 일반 | 레자크지 180g 이상 | 권 | 1,000 |
| B5 | 일반 | 레자크지 180g 이상 | 권 | 1,000 |
| 복사 | A4 | 컬러 | 미색 모조지 80g | 면 | 300 |
| B5 | 컬러 | 미색 모조지 80g | 면 | 300 |
| A4 | 일반 | 미색 모조지 80g | 면 | 30 |
| B5 | 일반 | 미색 모조지 80g | 면 | 25 |

❍ 표지(제본비 포함) 요금 기준

1) A4 및 B5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2) 200g 이상의 아트지, 또는 180g 이상의 레자크지를 사용함

※ 표지디자인 : 표지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비용을 별도 계상하지 않음

※ 제본 : 무사무선철을 원칙으로 별도의 비용을 계상하지 않음 (코팅비 포함)

❍ 본문 복사 요금 기준

1) A4 및 B5를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2) 미색 백상지 80g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 복사 페이지만을 계상함

❏ 봉투 제작 요금표 (부가세 별도)

|  |  |  |  |
| --- | --- | --- | --- |
| **구 분** | **세부규격** | **단가(원)** | **비 고** |
| 편지봉투 | 206㎜ × 100㎜ | 30 | 1000매, 1색도 기준  (문화원 로고 포함) |
| 편지봉투 | 220㎜ × 103㎜ | 30 |
| 이중봉투 | 206㎜ × 100㎜ | 50 |
| A4 | 332㎜ × 241㎜ | 50 |
| 특대 | 392㎜ × 288㎜ | 80 |

❏ 기타 물품 요금 (부가세 별도)

❍ 기타 물품성인 현수막, 배너, 하드케이스, 명찰 등의 경우 시중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함

|  |
| --- |
| 13. 식비 및 간식비 |

|  |  |
| --- | --- |
| 1인당 1식 급식단가 | 8,000원 이내 |
| 1인당 1식 간식단가 | 4,000원 이내 (급식단가의 1/2이내) |

|  |
| --- |
| 14. 시중노임단가 |

1. 개별직종 노임단가

|  |  |  |
| --- | --- | --- |
| **번호** | **직종명** | **단가** |
| 1001 | 작업반장 | 180,013원 |
| 1002 | 보통인부 | 141,096원 |
| 1003 | 특별인부 | 179,203원 |

※ 1일 8시간 작업 기준

2. 직종해설

|  |  |  |
| --- | --- | --- |
| **번호** | **직종명** | **해설** |
| 1001 | 작업반장 | 각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십장) |
| 1002 | 보통인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
| 1003 | 특별인부 |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 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

3. 시중임금 적용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
| --- |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